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병무청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8월 31일에서 2024년 8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9항제7호 중 “병역준비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단서 중 “5명”을 “2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을 “8”로 하고, “전기운영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09”를 각각 “1,50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을 “8”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22”를 “19”로 하고, “전기운영서기 1”을 삭제한다.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4년 8월 31일”로, “2022년 9월 1일”을 “2024년 9월 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4년 8월 31일”로, “2022년 9월 1일”을 “2024년 9월 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4년 8월 31일”로, “2022년 9월 1일”을 “2024년
9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무국) ① ~ ⑥ (생략)	제9조(사회복무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⑧ 삭제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병역준비역</u>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7. <u>전시근로역</u> ----- --
8. ~ 17. (생략)	8. ~ 17. (현행과 같음)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④ ----- ----- ----- ----- -----

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8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⑦ (생략)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② 삭제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2명

⑤ ~ ⑦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③ -----

----- 2024년 8월
31일----- 2024년 9월
1일 -----

-----.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
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
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
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
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기 1명)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9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
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
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
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국방부령 제100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illegible]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 ----- ----- -----.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07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 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 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 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 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 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u>2022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2년 9월 1일</u> 이후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 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 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 ----- ----- <u>2024년 8월 31일</u>----- <u>2024년 9월 1일</u>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7</u>	<u>8</u>	+1
•	•	•	
•	•	•	
<u>전기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09</u>	• <u>1,506</u>	-3
일반직 계	<u>1,509</u>	<u>1,506</u>	-3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7</u>	<u>8</u>	+1
의료기술서기	<u>22</u>	<u>19</u>	-3
•	•	•	
•	•	•	
<u>전기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